

요약지

2022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□ 2021년 추진성과

- 행안부 주민참여예산제 최우수 기초지자체 선정 (2년 연속)
- 2022년 사업 예산 : 115건 2,865,440천원 편성

구분	사업 건수	예산액
합 계	115건	2,865,440천원
시 단위 사업	9건	457,600천원
동 단위 특화 사업	6건	749,040천원
동 단위 지역 사업	100건	1,658,800천원

□ 추진방향

- 예산부서 등과 TF팀 구성 후 실질적인 운영매뉴얼 제작
-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 대표기구인 동 주민자치회와 통합 운영
- 기 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
-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(시흥자치TV 유튜브 연계)

□ 주요 변경사항

구분	2021년도	2022년도
매뉴얼	▶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자료 제작배포	▶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매뉴얼 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- 주민자치과·행정과·예산법무과 간 참여예산 TF 구성 - 사업선정 기준 객관화 (객관적 정량지표 및 사례 수록)
주민자치연계	▶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 분과 운영 (정왕1~4동) ▶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와 동시 실시 → 자치계획 연계	▶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 분과 운영 확대를 통해 대표성 확대 (22년 확대 적극 지원) ▶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연계 를 통해 자치계획 실행력 부여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고도화
모니터링강화	▶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후 추진실적 제출	▶ 기추진·현년도 추진 사업 집중 모니터링 으로 향후 1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음 - 상·하반기 모니터링 추진 후 사후관리 추진
참여예산학교	▶ 제안 접수시 동별 참여예산 학교 운영 (17개동, 168명 참여)	▶ 대상별·과정별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치력 강화 - 일반 주민, 참여예산·주민자치위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시기별 컨설팅 추진

2022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

예산편성 등 예산 쏠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·심사·결정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실현

I 추진 개요

1. 추진근거

- 지방재정법 제39조 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-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-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2. 추진 방향

- 예산부서 등과 TF팀 구성 후 실질적인 운영매뉴얼 제작
-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 대표기구인 동 주민자치회와 통합 운영
- 기 추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강화
-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(시흥자치TV 유튜브 연계)

3. 주요 변경사항

구 분	2021년도	2022년도
매뉴얼	▶ 2021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후 교육자료 제작·배포	▶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매뉴얼 을 통한 체계적인 운영 - 주민자치과·행정과·예산법무과 간 참여예산 TF 구성 - 사업선정 기준 객관화 (객관적 정량지표 및 사례 수록)
주민자치연계	▶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 분과 운영 (정왕1~4동) ▶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와 동시 실시 → 자치계획 연계	▶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 분과 운영 확대를 통해 대표성 확대 (22년 확대 적극 지원) ▶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연계 를 통해 자치계획 실행력 부여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고도화
모니터링강화	▶ 부서별 자체 모니터링 후 추진실적 제출	▶ 기 추진·현년도 추진 사업 집중 모니터링 으로 향후 10년을 시작하는 원년으로 삼음 - 상·하반기 모니터링 추진 후 사후관리 추진
참여예산학교	▶ 제안 접수시 동별 참여예산 학교 운영 (17개동, 168명 참여)	▶ 대상별·과정별 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치력 강화 - 일반 주민, 참여예산·주민자치위원 및 전담공무원 대상 시기별 컨설팅 추진

Ⅱ 2021년 운영성과


1. 2022년 사업 선정 결과 : 115건 2,865,440천원 선정

구분	사업 건수	예산액
합 계	115건	2,865,440천원
시 단위 사업	9건	457,600천원
동 단위 특화 사업	6건	749,040천원
동 단위 지역 사업	100건	1,658,800천원

2. 2021년 주요 운영성과

-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전면 개편 → 시민 접근성 향상 및 관리 일원화
- 1년 365일 상시 제안 접수 창구 신설 → 시민 의견 수렴 확대
-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한 온라인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개최
 - ZOOM 활용 실시간 중계 (눔내홀 ↔ 19개동 ↔ 시민 간 연결, 122명 참여)

3. 2021년 주요 추진실적

구 분	2021년도					
사업선정을 위한 심의과정	1~3월	4~5월	6월	7월	7~8월	8~9월
	제안접수 449건 접수	동 자체심사 시 요건심사 290건 적격	부서검토 157건 적정	예산적정성 심사 157건 검토	사전심사 (투표대상선정) 143건 최종선정	주민총회 122건 선정
주민총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모든 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 실시 (8.25. ~ 9. 15. / 16,623건 투표) ▶ 참여인원 : 19개 동 / 8,380명 (동 주민총회 현장인원 6,411명 + 온라인 투표 1,847명 + 한마당 심사 122명) ▶ 사업선정 : 122건 (시단위 10건, 동 특화 8건, 동 지역 104건) 					
위원회 회의	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: 4차 / 분과회의 : 5차 / 운영위원회 : 5차					
역량강화 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2021년 동별 찾아가는 참여예산학교 운영 (19개동 / 168명, 34시간) ▶ 온오프라인 교육 총 10회 1,137명 참여 					
시민 설문조사	▶ 온라인 투표와 연계하여 추진 (1,261명 참여 : 온라인 581명, 오프라인 680명 / 8.25~9.15.)					
행안부 평가	▶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 평가 → 기초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					

Ⅲ 2022년 주요 추진사항

1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기준 명확화

- 행정과 주민자치과 예산법무과 간 TF팀 구성 후 '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' 제작
- 객관적인 정량지표가 포함된 '사업 선정 기준표'를 통한 사업검토 내실화
- 사업구체화 시 객관적 증빙자료(견적서 등 산출내역)를 통한 예산 낭비적 요소 배제
- 시 행정 업무와의 중복사업 방지 및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시 관련부서 예산으로 편성

2. 주민자치와의 연계로 주민밀착형 사업 발굴

-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 분과 확대를 통해 주민대표성 확보
- 자치계획·마을복지계획과의 연계로 주민주도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숙의과정 강화
- 동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자치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 중심 편성

3. 제도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예산학교 운영

- 대상별·과정별 참여예산 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자치력 강화
 - 일반 주민, 참여예산·주민자치위원, 전담공무원 대상 시기별 컨설팅 추진
- 주민제안서 숙성 및 사업품질 향상을 위해 실무 컨설팅 강화 (전문가 및 부서 등)

4.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강화

-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객관적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
 - 완료사업 및 추진 중인 사업 및 완료 사업에 대해 효과성,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 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
 - 상·하반기 모니터링 후 시정조치 및 향후 관리계획 제출
- 기추진 주민참여예산 사업 집중 모니터링 후 사후관리 실시 (사후관리 예산 배정)
- 주민참여예산제 유공 표창 및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지원 현실화

IV 2022년 공모 계획

1. 공모 개요

□ 접수기간 : 2022. 2. 15.(화) ~ 4. 29. (금)

※ 사업 제안은 상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, 집중 접수기간 이후 접수분은 익년도 이월

□ 접수방법 : 온·오프라인 병행 운영

○ (온라인)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

○ (오프라인) 집중기간 동별 접수창구 운영

※ 오프라인 접수 분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최종 접수

□ 대상 사업 : 다수 주민 수혜, 공공성 있는 사업

○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밀접 소규모 사업

○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

○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과정을 거친 사업

※ 공모 제외대상

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(관련되는 법령 확인)

② 선거법 위반 사항

③ 장기검토과제

- 중기지방재정계획, 타당성 조사, 지방재정영향평가,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

- 예) 다목적 체육관 · 수영장 · 문화센터·도서관 · 주민센터 등 건립, 공영주차장 · 신규공원 · 육교 등 설치

④ (일회성) 축제 및 행사성 사업

※ 일회성 판단 기준 : ① 최소 4회/1년 개최 ② 1회 500만원 이하

⑤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

⑥ 국도비 매칭사업

⑦ 계속사업

-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 (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)

⑧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· 중복사업 (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)

⑨ 행정내부 운영 예산 (공공청사 기능보강 등)

⑩ 인건비·법적경비·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

⑪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

⑫ 사유지 내의 사업 (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 필수 및 향후 토지·건물 등의 관리주체·방안 제출)

⑬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

⑭ 일반 민원성 제안,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

- 예) 대중교통 이용, 주정차 단속, 불법행위 단속, 환경경비 등

⑮ 타 기관 (경찰서, 교육청, 소방서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에서 이행할 사업

2. 공모 분야·규모 : 총 50억원

구분	내용	실행 주체
시 정책사업 (17억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문제 해결형 시 정책사업 -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가 일반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사업 	- 해당 사업부서
동 단위 (33억)	동 특화 사업 (14억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마을 특화 사업 (동별 1개 사업 이내) - 사업 당 1억 5천 이내 (시설사업·공동체 사업 복합 제안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 사업부서 (시설 사업) - 동 주민센터 (기타,공동체사업)
	동 지역 사업 (19억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동 지역회의 선정사업 동별 1억 실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시설사업은 사업 당 3천만 이내 ▷ 기타사업은 사업 당 1천 5백만 이내 ② 동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사업 중심 편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동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의과정 거친 문제해결형 사업 ▷ 기추진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예산 (20,000천원 내) (※ 2023년 한시적 예산) 	- 동 주민센터 (기타,공동체사업)

3. 공모 과정



1 제안 접수 (2~4월)

- 동별 참여예산 사업으로 구체화할 자치계획 및 마을 복지계획 제안 접수
- 찾아가는 참여예산 학교 운영 (2월)
 - 내용 : 2022년 운영계획 안내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등
-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(3~4월) 후 사후관리 필요 사업 제안 접수

2 요건 심사 및 제안 분류 (5월)

- 주체 :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분과 및 도시환경분과
- [요건 심사] 공모 제외사항(붙임)에 따라 부적격 사업 제외
- [제안 분류 및 사업구체화] 유사사업 통폐합 후 제안 의제별 분류
 - (시 사업) 제안 분류 · 병합 및 소관부서 확인
 - (동 사업) 각 동 제안서 배분 및 동별 사업 구체화

3 부서 검토 및 사업구체화 (5~6월)

- (제안 구체화) 담당부서와 제안자가 협업하여 제안 내용 구체화 및 수정보완
- (산출내역 객관화) 예산 과목별 소요금액 산정

4 사전심사 (투표대상 선정) (7월)

- 주체 :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치행정분과 및 도시환경분과
- 부서 검토 의견 종합하여 사업구체화 위한 사업숙성 및 부서 협력회의 실시

5 예산 적정성 심사 (7월)

- 사업선정 기준표(붙임)에 의해 검토 및 수정 · 보완
 - 예산 편성 기준 위배 여부, 통계목, 산출내역의 명확성, 예산 낭비적 요소 여부 검토

6 주민총회 및 한마당 (8월)

- (모든 사업) 온라인 주민투표 실시
- (시 단위, 동 특화 사업)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실시 : 온라인투표, 시민평가단 심사
 - 각 유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평가단 구성
- (동 지역 사업) 동별 자치계획 주민총회와 연계한 주민총회 운영

7 제안사업 최종 확정 및 제출

-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으로 부서, 제안자, 위원 참여 숙의과정 보고서 제출

8 최종 심의 및 예산안 편성 (9월)

- 최종 선정된 사업에 2023년 예산안에 반영 (의회 예산심의 적극 대응)

4. 세부 추진 일정

구분	시 주민자치과	동 주민센터 (19개 동)
(1월) 계획/교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2년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수립 - 시흥형 주민참여예산 운영 매뉴얼 제작 - 시흥시 주민자치·참여예산 설명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참여예산 제안접수 준비 및 홍보
(2월~4월) 제안접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 접수 (2.15. ~ 4. 29.) - 동별 찾아가는 참여예산 학교 운영 (2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내용 : 2022년 운영계획,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- 시 위원, 주민자치지원관 대상 교육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내용 : 모니터링 및 요건심사 방법 교육 -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(3. 15. ~ 4. 15.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안 접수 (2. 15. ~ 4. 29.) - 각 동 자치계획(마을계획) 제안 접수 - 사업계획서 작성 시 상시 컨설팅 추진 -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(3. 15. ~ 4. 15.) - 접수된 제안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록(4. 29.까지)
(5월) 요건심사 제안 분류	<p>(접수된 전체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적격 사업 제외 (시 위원회 분과별 실시) - 시 사업 / 동 사업 정리 (시 위원회 분과별 실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동 사업) 동별 제안서 배분 및 사업구체화 요청 ▶ (시 사업) 제안 분류 · 병합 → 의제별 분류 및 사업 구체화 ▶ (모든 사업) 소관부서 확인 	<p>(요건심사 결과 적격인 동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구체화 및 부서 검토 필요 사항 정리 - 사업계획서(소요예산액 포함) 작성 - 동장, 주민자치회 · 참여예산위원회 사업의 적합성 판단
(6월) 부서검토	<p>(시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률·조례 적격여부 등 관련부서 검토 - 제안 구체화 및 예산과목별 소요금액 산정 -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- 산출내역 객관화 (견적서 첨부 등) 	<p>(동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법률·조례 적격여부 등 관련부서 검토 - 제안 구체화 및 예산과목별 소요금액 산정 - 산출내역 객관화 (견적서 첨부 등)
(7월) 사전심사 & 예산적정성 심사	<p>(시 사업 + 동 사업) 사전심사 및 사업 구체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 적정성심사 : 예산편성기준 위배여부, 통계목, 산출내역의 명확성, 예산 낭비적 요소 여부 (견적서 필수 첨부) - 부서 검토 의견 종합하여 사업구체화 및 부서 협력회의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담당부서, 유관부서, 제안자,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 	<p>(동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전심사 및 사업 구체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담당부서, 유관부서, 제안자,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이 참여하여 숙의 실시 - 예산 적정성 심사 (동 → 주민자치과 취합 → 예산팀) - 투표 대상 선정 (동 지역회의 의결)
(8월) 주민총회	<p>(시 정책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온라인 투표 (설문조사 연계) - 주민참여예산 한마당(시단위, 동 특화)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심사 위원 : 각 유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민평가단 구성 	<p>(동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총회 실시 (주민자치회/위원회와 연계)
(9월) 사업 구체화 최종안 제출	<p>(시 정책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부서, 제안자, 참여예산위원 등 참여하여 구체화 - 숙의과정 보고서 첨부 (제안자 참여, 부서 협력회의, 현장 확인 내역) 	<p>(동 사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 선정사업(동특화, 동지역)에 대해 동 지역회의 의결을 받아 최종 제출 (동 → 주민자치과) ▶ 최종 선정 목록, 각 사업별 사업계획서, 예산 사업설명서 (견적서 첨부)
(9월) 위원회의결 & 예산안편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체 예산 (시 사업, 동 사업)에 대한 위원회 의결 - 2023년 본예산 편성자료 제출 (모든 부서) (주민참여예산위원회 검토 결과 첨부) - 보조금심의위원회 편성자료 제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본예산 편성자료 제출 (동 사업) - 하반기 모니터링 후 기추진 사업 및 2022년 사업 추진 현황 점검
(11~12월) 예산안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안 심의 및 확정(의회) 	

2.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주민대표기구인 동 주민자치회와 통합 운영

□ 추진배경

주민자치회 참여예산분과에서 담당하는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확대·개편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고도화하고 주민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.

□ 추진 근거

-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22조 (지역회의의 대행)
-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 (설치 및 구성)

□ 현황

< 그간 추진사항 >

- ▶ 2019. 2. 조례 일부개정
 - 주민자치(위원)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마련
 - 지역회의에 주민자치(위원)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규정
- ▶ 2020. 2 ~ 3. 정왕1~4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대행 운영
- ▶ 2020. 4. 조례 일부개정
 - 주민자치(위원)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시, 시 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명시
- ▶ 2021. 5. 제6차 주민자치 민-관 TF팀 회의 결과 (주민자치-참여예산 연계 필요)
- ▶ 2021. 11. 주민참여예산 성과공유회 결과 (주민자치회와의 통합에 대한 의견 합치)

○ 주민자치회 분과 운영 현황

단계		동별 현황	
통합 완료	2018년	(4개동) 정왕1~4동	
	2022.1월	(4개동) 대야동, 군자동, 능곡동, 장곡동	
통합 계획 (2022년 목표)	주민자치회 운영 동	(6개동) 신천동, 신현동, 은행동, 매화동, 과림동, 월곶동	
	주민자치위원회 → 주민자치회 전환 중인 동	(3개동) - 주민자치회 전환 시 통합 예정 : 연성동, 목감동 - 통합 관련 협약 완료 : 정왕본동	
장기 계획		(2개동) 배곧1~2동	

※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행안부 승인 (2021.12.30. : 은행동, 연성동, 장곡동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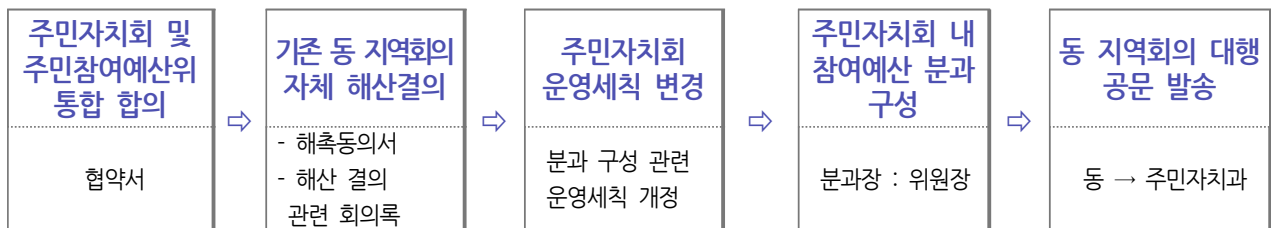
□ 현 실태 및 개선방안

현 실태	개선방안
사업 발굴, 주민총회 등 중복으로 행정력 및 시민의 자치력 낭비	⇒ (공모절차 연계) 자치계획과 사업선정 과정 및 일정 연계 -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안 접수 · 주민총회 일정 연계
기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민원성 제안 및 단편적인 프로그램성 사업이 대다수	⇒ (사업 고도화) 자치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의 숙원 과제 및 정책과제와 연결하여 수요자 중심의 의제 발굴
- 동 지역회의 위원(7~15명)의 주민 대표성 확대 필요 - 다른 유관단체 등과 연계 필요	⇒ (대표성 확대)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와의 통합을 통해 지역자원의 활용이 용이해지며, 주민참여활동의 효율성 및 주민대표성 확대
예산 편성에만 주민의 참여범위가 한정되고 행정에서 집행	⇒ (주민권한 확대) 주민자치회를 통해 사업설계 · 집행 · 평가까지 참여 범위 확대

※ 자치계획 : 주민생활과 관련된 동의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직접 실행하는 주민자치회 사업계획

□ 추진 절차

- 동별 주민참여예산사업을 담당하는 동 지역회의의 자체 해산결의가 있을 경우로 한정
- 동장은 시장에게 동장 명의의 공문실시를 통해 주민자치(위원)회의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대행 신청
- 통합절차(안) ※ 동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

첨부서류	① 동 지역회의 위원장 선출 등 대행과 관련한 주민자치회 회의록 ② 주민참여예산 분과 위원 명단 (7명 이상 15명 이내) ③ 시장의 운영방침에 맞춰 변경한 운영세칙 ④ 기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자체 해산결의 관련 자료 (예: 해촉 동의서, 해촉 건의, 해산 결의 관련 회의록 등)
------	--

□ 향후 계획

- 2022년 내 쏘 동 주민자치회-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목표
- 주민자치회 동 지역회의 운영 관련 조례 정비 (대행 → 운영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 - 주민자치회 통합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지원

□ 주민자치회 내 참여예산분과 운영

○ 구성

- 주민자치(위원)회 내에 「참여예산분과」(가칭)를 구성해야 함
- **분과원 수는 조례에 따라 15인 이내에서 의결조건을 충족**(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) 할 수 있어야 하며, 주민제안 공모사업 절차 및 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 **동 지역회의의 역할**을 수행하는데 부족하지 않아야 하므로, **최소인원 7명 이상을 유지**해야 함
-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운영방침에 맞춰 **세칙 변경**
- 시장은 주민자치(위원)회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목적 및 조례 제20조(기능)에 명시된 내용 및 등 동 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, **대행을 중단**하고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를 재구성할 수 있음

○ 운영

- **(회의운영)** 동 지역회의의 월례회의는 주민자치(위원)회의 월례회의로 대체 가능하나, 회의록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안건·보고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월례회의만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로 인정 (안건 등에 ‘주민참여예산’ 병기)
- **(자치계획 연계)**

- ① 마을자원조사/분석결과 바탕으로 의제 정리
- ② 의제 성격에 따라 각 분과 배정
- ③ 분과별로 자치계획사업 / 주민참여예산사업 분류
- ④ 분과별 검토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예산분과 또는 참여예산위원회로 이관
- ⑤ 주민참여예산분과 또는 참여예산위원회로 이관된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
- ⑥ 자치계획을 분과회의를 통해 유사사업 통합 후 의제 정리
- ⑦ 분과별로 중요도/시급성/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제 선정

- **(주민총회)** 주민자치회 총회로 통합 개최

3. 주민참여예산제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

□ [동 별]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(1~4월)

- 대상 -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위원, 동 주민자치회 위원 등
- 내용 - 주민자치·참여예산 연계 방안 (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분과로의 통합 등)
 - 2022년도 운영계획,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 (사업대상, 제외대상 등)
 - 사례별 학습 (사업제안서 작성 교육, 모니터링 방법 및 이후 사업 구체화)

□ [위원회]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교육 (연중)

- 내용 - 2022년도 운영계획에 따른 분과별 역할 교육
 - 참여예산 사례별 학습 (요건심사, 사업구체화 방법 및 모니터링 등)

□ [공무원] 주민참여예산 담당 공무원 교육 (상·하반기)

- 내용 -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개요, 제외대상 사업, 대민 홍보 방법, 주민자치-참여예산 연계 방안 등

□ [일반주민] 유튜브를 통한 교육 (상시)

- 내용 - 2022년 운영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작성법, 모니터링 방법 등

□ [동 지역회의] 주민자치회 통합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(상시)

장기 계획	(2개동) 배곧1~2동	- 주민자치와의 연계 필요성 안내
통합 계획	(6개동) 신천동, 신현동, 은행동, 매화동, 과림동, 월곶동	-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통합 시너지 효과 등 설명 및 통합 방법 안내
	(3개동) 연성동, 목감동, 정왕본동	-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하는 통합 방법 안내
통합 예정	(4개동) 대야동, 군자동, 능곡동, 장곡동	- 주민참여예산과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- 자치계획 발굴 등 초기 참여예산 분과 운영 컨설팅
통합 완료	(4개동) 정왕1~4동	-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의 자치계획 실행 - 주민자치회 프로세스 안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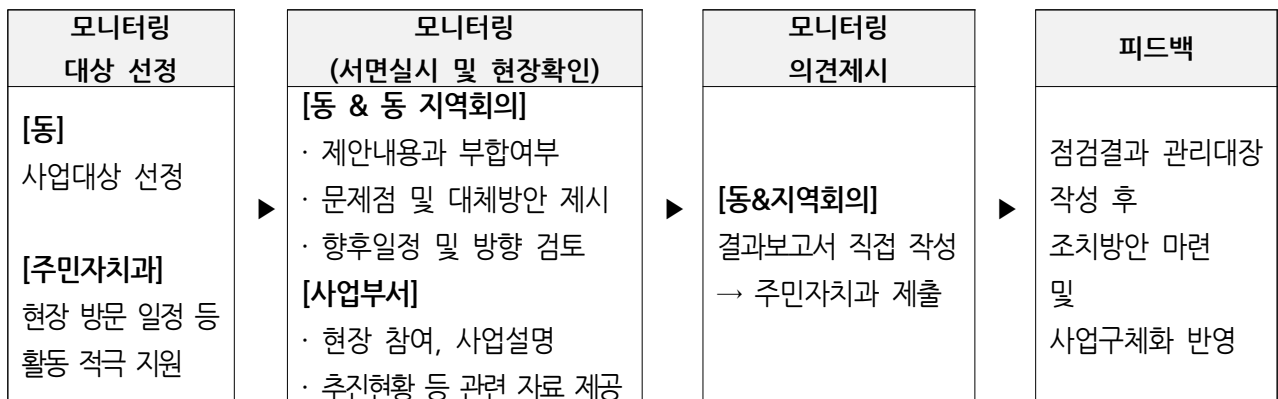
4.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추진

□ 추진 배경

- (문제점) 제안사업 및 사업계획의 취지·목적과 상이하게 추진되는 경우 발생
완료된 사업의 지속적인 유지·관리 문제 대두 → 사후관리 강화 필요
- (목 표) 사업의 효과성, 유지·관리 등을 검토하는 모니터링을 통해 환류 과정 강화 및 제안·계획 수립·집행 및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제고

□ 추진 개요

- (추진주체) 주민자치과(총괄계획 수립 및 보고),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, 동 지역회의
- (추진시기) 상·하반기 집중 모니터링 및 상시
- (대 상) - [기 추진] 최근 3년간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 시설사업
- [현 년도]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 (시설·공동체 사업)
- (운영방법)



○ (검토사항)

- 당초 제안내용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
- 사업 진행상황, 예산 집행 적정성, 낭비적 요소 유무, 사업 효과분석 등 점검
- 사업 추진시 혹은 완료 후 주변 민원이나 문제점 발생 여부
- 대상지 현장 방문점검 결과 피드백 및 사업추진 반영 활용

□ 추진사업 관리 대장 작성

- 사업 추진 주축 동·부서에서 추진완료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대장 작성
-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추진
- 동 지역회의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정기적인 지도·감독

5.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기구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

○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- 구성 (총 50명)
 - 당연직 26명 : 위원장(부시장) 포함 공무원 7명, 동 지역회의 위원장 19명
 - 위촉직 24명 : 수석부위원장(위촉직 중 선발) 포함
 - 시 위원회 간사 : 주무부서장 (주민자치과장)
- (임기) : 당연직은 재직기간, 위촉직은 2년 (1회 연임 가능)
- (기능)
 - 시민 제안 사업 심의, 조정, 의결 기능
 -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이를 위한 현장방문, 간담회 등의 개최 등
 -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포함한 예산사업 모니터링
- (운영위원회)
 - 구성 (총 9~10명) : 4개 분과장 및 분과 간사
 - 주민참여예산 운영방향 제시 및 위원회 운영
- (분과위원회)

분과	업무 및 담당분야(유관부서)	
기획홍보	-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주관 - 경기도민 및 시흥도시공사 참여예산제도 대응 - 예산과정에 대한 참여(주민의견서 접수 등) 총괄 - 주민참여예산 홍보(콘텐츠 제작 등) - 역량강화 사업 주관(예산학교, 워크숍 등)	
자치행정	- 시 정책 사업 심의 및 숙성	미래전략담당관, 경제국, 복지국, 농업기술센터, 평생교육원, 행정국
도시환경	- 시 정책 및 동 단위 특화사업 (교차)모니터링 주관	보건소, 맑은물사업소, 스마트시티사업단, 도시주택국, 안전교통국, 환경국
동 지역회의	- 지역회의의 운영 및 활성화 - 동 단위 사업 심의 및 숙성 - 동 단위 일반 사업 (교차)모니터링 주관 - 주민자치회 및 동 유관단체와의 연계 및 협업	

○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

- 구성 (동별 7명 이상 15명 이내) : 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

-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선출
- 동 지역회의 간사 : 동 주민센터 사무장
-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동장이 위촉 / 위원 중 2명 이상은 주민자치(위원)회에서 추천
- 각 동 위원장은 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서 참여, 이 중 권역별 1명은 시 위원회 지역예산분과 간사로서 운영위원회 참여

- 임기 : 2년 (1회 연임 가능)

- 기능

- 동 주민 제안 사업 심의
- 동 단위 주민총회 개최 및 시 위원회에 선정결과 제출
- 예산 관련 주민 의견 수렴
-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
- 주민참여예산 홍보 및 그 밖의 주민참여예산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

※ 권역별 구분

권역	지역	소속동	비고
甲	1	대야, 신천, 은행, 과림	
	2	신현, 매화, 목감, 연성, 능곡, 장곡	
乙	3	군자, 정왕본, 정왕1, 정왕2, 월곶	
	4	정왕3, 정왕4, 배곧1, 배곧2	
계		2개 권역 4개 지역 내 19개동	

○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

- 위원회와 지역회의의 구성 시 여성, 장애인,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

○ 회의 수당

-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 수당, 여비 지급

□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(2021. 11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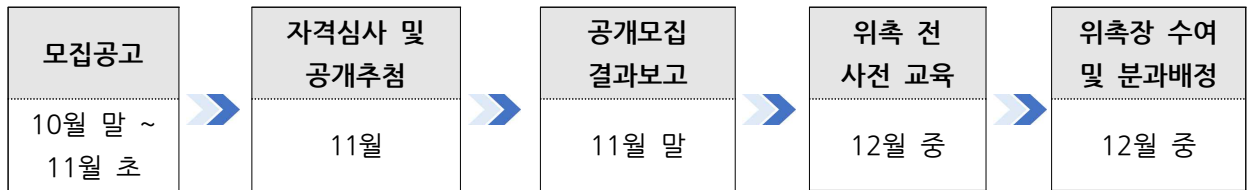
○ 모집개요

- 모집 인원 : 8명 이상 (※ 임기 종료 후 연임의사를 밝히는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총 원	당연직	연임위원	공개모집	비 고
50명	26	16	8	당연직: 부시장, 국장(5), 예산법무과장 동 지역회의의 위원장(19)

- 신청 자격 : 모집일 현재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
 -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
 - 시흥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
 - 시흥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
- 위원 임기 : 위촉년도부터 2년 (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○ 모집 절차(안)



※ 성별, 연령, 지역을 고려한 공개추첨 실시 후 주민참여예산 교육 수료자 위촉

6.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개최

- 개최시기 : 2022. 12월 중
- 주 관 :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
- 참석대상 : 시 참여예산위원회, 동 지역회의, 주민자치회, 시의원, 일반시민 등
- 운영방법 :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개최(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)
- 주요내용
 -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제도발전 토론회
 - 위원회별 우수 활동성과 사례 발표
 - 시상 (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등)
 - 표창부문 :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유공 (훈격 : 시흥시장)
 - 표창대상 : 민간인, 공무원 (※ 별도 2022년 주민참여예산 유공자 포상 계획 수립 예정)

7.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관리

- 대상사업 :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115건
- 주요내용 : 사업별 추진상황 관리카드 분기별 작성, 사업집행 점검·관리, 우수사업 관리

8. 홍보 계획

홍보매체	주요내용	추진기간
지역사회 홍보	▶ 지역사회 내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한 홍보	상시 (집중기간 : 2월 ~ 4월)
현수막 및 배너 게첨	▶ 공공 게시대 현수막 게첨 ▶ 시·동 민원실 홍보 배너 설치	
버스정류장 홍보	▶ 버스정류장 전광판 통한 포스터 게시	
인터넷, 언론사 등	▶ 시흥시청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▶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 홍보	
시 대표 SNS	▶ 블로그, 페이스북, 카카오톡, 밴드 등	
유튜브 활용	▶ 주민자치과 자체 유튜브 '시흥자치tv' 활용	

9. 인센티브

-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유공 포상 추진
-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(2022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예정)

시흥시에 제안합니다!!

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서

○ 제안자 정보

제안자*		연락처*	
주소		이메일	

○ 사업명 :

사업근거 (법령)	기재 안하셔도 됩니다	사업구역	사업실시 희망지역(동 이름 / 시)
제안배경 (무엇이 문제인가?)	(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문제 기재)		
사업개요 (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)	▶ 사업위치 (사업이 필요한 위치는? 주소 또는 건물 명칭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위치 기재)		
	▶ 사업량 (무엇이 얼마나 필요한가요?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, 사업구간, 수량 등 기재)		
	▶ 사업내용 (현재 상황과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재)		
	▶ 사업목적 (필요성 및 사업효과, 수혜범위, 대상 등 구체적 기재)		
덧붙이고 싶은말	▶ 기타 덧붙이고 싶은 말 (지역주민 여론 또는 의견, 위치도 또는 현장사진 첨부)		

2022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·선정과 관련된 일체사항에 대해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붙임 2

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근거

□ 지방재정법 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는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**시행하여야 한다**.
-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)

-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**참여할 수 있는 방법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
 2.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**반영할 수 있다**.
- ③ 그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·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·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

○ 제7조(적용범위)

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전액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자체사업 본예산으로 한정하며, 인건비·법적경비·경상경비는 제외한다.

○ 제8조(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)

-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회,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하며, 그 외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**참여할 수 있는 방법**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주민총회
 2.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 등을 통한 의견제출

○ 제9조(의견제출)

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**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**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.

○ 제28조(지역회의 예산안 검토)

시장은 지역회의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경우 사전에 예산안에 대한 **검토 의견서**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**제출** 해야 한다.

붙임 3

주민참여예산 선정 기준표

☐ 요건심사 체크리스트 (서식1)

- 제외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: 적정
- 제외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: 부적정

구분	제외사업	적정	부적정 (제외)
요건 심사	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(관련되는 법령 확인)		
	② 선거법 위반 사항		
	③ 장기검토과제 - 중기지방재정계획, 타당성 조사, 지방재정영향평가,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- 예) 다목적 체육관·수영장·문화센터·도서관·주민센터 등 건립, 공영주차장· 신규공원·육교 등 설치		
	④ (일회성) 축제 및 행사성 사업 ※ 일회성 판단 기준 : ① 최소 4회/1년 개최 ② 1회 500만원 이하		
	⑤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		
	⑥ 국도비 매칭사업		
	⑦ 계속사업 -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 (공사나 제조,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)		
	⑧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·중복사업 -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		
	⑨ 행정내부 운영 예산 (공공청사 기능보강 등)		
	⑩ 인건비·법적경비·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		
	⑪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		
	⑫ 사유지 내의 사업 (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 필수 및 향후 토지·건물 등의 관리주체·방안 제출)		
	⑬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		
	⑭ 일반 민원성 제안,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- 예) 대중교통 이용, 주정차 단속, 불법행위 단속, 환경정비 등		
	⑮ 타 기관 (경찰서, 교육청, 소방서, 철도공사, 한국전력공사 등)에서 이행할 사업		

☐ 사업부서/ 예산부서 검토 서식 (서식2)

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제안사업 부서검토 의견서							
사업 제목							
◆ 부적격 사유 해당 여부 검토							
검토항목	사업부서 검토	예산부서 검토	검토 의견 (보완 사항 등)				
① 부적격 사업 해당 여부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부적격 해당 사항 기재				
② 법령위반여부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관련 법령 기재 예) 「시흥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조례」제2조 제6항 및 제13조				
③ 선거법 저촉 여부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선심성 사업 등 선거법 위반 선관위 질의 등을 통해 검토				
④ 사전절차 필요유무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사전절차 내용 기재 (예산 편성 전까지 사전절차 이행불가 → 부적합)				
⑤ 중복사업 여부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중복사업인 경우 해당 사업 관련 예산 세부 사업명, 예산액 등 기재 ※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서 사업과 중복여부 또는 연계 방안 기재				
⑥ 향후계획성	해당 () 해당없음 ()	해당 () 해당없음 ()	※ 유지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여부				
◆ 사업성에 대한 검토의견 (부적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미채점 후 종합의견 작성)							
심사항목	심사 기준		배점 기준				(부서) 득점
공익성 (20)	■ 공동체 문화 조성 효과 여부	20	16	12	8	4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효과성 (20)	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여부	20	16	12	8	4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시급성 (15)	■ 우선 편성 필요 여부	15	12	9	6	3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수혜성 (15)	■ 수혜범위의 정도	15	12	9	6	3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실시가능성 (15)	■ 상황 고려 적용 가능성	15	12	9	6	3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예산효율성 (15)	■ 산출근거의 적정성 여부 ■ 불필요 경비 포함 여부	15	12	9	6	3	
	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	
합 계 (100)	사업부서예산부서 검토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"반영가능", 미만인 경우 "반영불가"						00점
◆ 종합의견							
예산 적정성	① 통계목						
	② 산출근거						
종합의견		※ 보완할 점 기재 (반영 불가인 경우에도 보완하면 추진가능할 경우 보완할 점 기재) ※ 사업의 필요성, 타당성에 대한 부서 의견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서 사업과 중복여부 또는 연계방안 사업 시행 시 필요한 예산금액, 예산과목에 대한 부서이견 기타 제안사업과 관련된 부서 의견 (사업 추진 시 유의할 점 등)					
종합검토결과		반영가능 () 기시행중 () 수정·보완시 가능() 반영불가 ()					
검토 기관	부서명				검토자	확인자(부서장)	(서명)
	팀 명				작성자 : 팀장	담당	(☎ 310 -)

위치도

현장 사진

붙임 4

주민참여예산사업 관리카드(사업계획서) [예시]

000동-01

주민참여예산사업 사업명

제안자	성명		
<input type="checkbox"/> 제안사업 구체화			
사업기간		추진부서	
위 치		소요예산	
제안취지 (제안배경)	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		
사업내용	<input type="radio"/> 위 치 : <input type="radio"/> 사업기간 : <input type="radio"/> 사업대상 : <input type="radio"/> 사업내용 - - <input type="radio"/> 예산 산출내역 : -		
기대효과	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		
사업관리	<input type="radio"/> <input type="radio"/>		
검토부서 (0000과)	<input type="radio"/> 법률·조례기준 : <input type="radio"/> 검토결과 : <input type="radio"/> 검토의견 - -		

붙임 1**예산산출 내역 (예시)**

예산과목	산출내역	예산(천원)
기타보상금	·청년멘토 코칭(강사)비 : 490천원(3시간)×3회=1,470천원 ·청년멘토 강의비 : 120천원×10명×4회=4,800천원	6,270천원
사무관리비	·홍보비 : 500천원×1식×2회=1,000천원	1,000천원
	합계	7,270천원

붙임 2**사업위치도, 현황사진, 기타 시각적 자료 첨부**